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정일: 2003.12.29

개정일: 2009.06.01

담당부서: 총무처 - 구매팀(02-2123-2205)

제1조 (총칙)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는 연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본교 총처 구매팀 직원 등을 말한다.<개정 2009. 6. 1>
-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업무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국가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이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 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 제4조 (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 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 제5조 (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제6조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교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제9조 (수량조절)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본교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본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본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 제12조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한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 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본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 **제13조 (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본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

제15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 2. 계약번호
-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 6. 취급시 주의사항
-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 제16조 (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본교 가 정한 본교 귀속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 **제17조 (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 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 제18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수 있다.
 -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 금을 부과한다.
-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⑧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특허 및 상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본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 (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를 한후, 소정기한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대를 본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22조 (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의 지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 절차를 연장할 수 있다.
-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 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제23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직원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에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 제24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본교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3.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 제25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본교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2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야 한다.
 -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 비용
-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②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 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본교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30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적격심사요령(본교의 구매요청 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1조 (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 1.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다.
 -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조건에 없는 사항은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계 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 따른다.

부칙

- (1)(시행일)이 조건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일)이 개정조건(제14조 제3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 조건(제2조 제1호)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